

警 部 服 飾 小 考

崔 仁 麗*

A Study on the Kyung-bu Costume (Uniform of the Police)

In Ryu, Choi

<目 次>	
I. 序 言	C. 光武 3年 (1899年)의 常服制
II. 本 言	D. 光武 4年 (1900年)의 警部服制
A. 建陽 元年(1896年)의 警務服制	E. 光武 6年 (1902年)의 警務服制
B. 光武 3年(1899年)의 禮服制	III. 結 言

Abstract

In 1895(32nd year of King Ko-Jong), Kyung-moo-chung as westernized police system was established and the uniform of the police developed.

Regarding to the Uniform of the Kyung-bu-dai-sin(the Minister Kyung-bu) and to that of the Sun-gum(the low position of the Kyung-bu police), the Kyung-bu costume (Uniform of the police) is divided as Ye-bok(Formal uniform) and Sang-bok (Informal uniform).

Ye-bok(Formal uniform) is put on in the case of the law described, and Sang-bok(Informal uniform) is an everyday wear.

Ye-bok(Formal uniform) is composed of Ye-mo(hat), Eui(jacket), Go(trousers), Dai(decorative belt), Do(decorative sword), and Hwa(footwear).

Sang-bok(Informal uniform) is composed of Sang-mo(hat), Eui(jacket), Go(trousers), and Hwa(footwear).

Differences between Sang-bok(Informal uniform) and Ye-bok(Formal uniform) is the materials of the ornament, numbers of the decorative lines. Ye-bok(Formal uniform) has more grandeur[ornament].

A historic changes in the Kyung-bu costume(Uniform of the police) during the late of Yi Dynasty was little but the decorative materials and the numbers of the decorative line.

I. 序 言

우리나라는 高宗 13年(1876年) 병자수호조약 이후 근세 조선 왕조는 쇠국의 벽을 깨고 日本

에 門戶를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高宗 21年 (1884年) 일부의 개화사상가에 의해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이어 高宗 31年(1894年) 갑오경장이 계기가 되어 大部分의 制度가 近代化를 위한 개혁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高宗 31年(1894年) 6월 29일 軍國機務處에서

* 國際羊毛事務局 韓國支部 勤務

朝官 및 官服의 개혁을 시도하였고,⁽¹⁾ 이어 高宗 32年(1895年) 1월 11일에 朝官服의 2차 개혁을 착수하여 朝官의 服裝이 더욱 간소화하였다.⁽²⁾

同年 3月 칙령 78號로 陸軍服裝規則이 제정되어,⁽³⁾ 舊軍服이 사라지고 歐美式 軍服을 着用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舊韓末 우리나라는 外國制度를 채용하여도 무방하다 하여, 同年 11月 단발령에 이어,⁽⁴⁾ 歐美式 衣服의 채용을 선포함으로써,⁽⁵⁾ 高宗 32年(1895年) 4月 歐美式 武官服이 제정되었고,⁽⁶⁾ 이로써 國俗과 西洋衣服의 二重의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高宗 34年 年號를 光武로 고치고, 국호도 大韓帝國이라 칭하고 皇帝位에 오르게 되었다.

또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警部服은 高宗 32年(1895년) 7月 軍國機務處에서 舊制의 左右 포도청을 통합하여, 警務廳으로 직제를 개편함과 더불어 警部服製의 變化가 시도되었고,⁽⁷⁾ 주된 服製는 軍服에 준한 歐美式 服裝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警務廳은 여기에 警務使를 위시하여 警務官, 主事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本稿는 高宗 32年(1895年) 7月, 警務廳을 始作으로 하여, 光武 4年(1900年) 10月 警務廳이 警部로 昇格, 곧 이은 光武 6年(1902年) 8月 警部가 大警務廳으로 格下되어 光武 9年(1905年) 警察 治安권이 日本軍 헌병대에 장악되기까지⁽⁸⁾의 舊韓末 警部服을 「高宗實錄」 및 高宗時代史를 中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本 言

高宗 32年(1895年) 7月 軍國機務處에서 左右 포도청을 합하여 警務廳으로 개칭하면서 직제 및 복제의 일대 혁신을 갖고 왔으며, 이는 現在의 內務部와 같은 조직으로, 이 警務廳은 光武 4年

(1900年), 警部로 昇格하여 불리워졌고, 最高의 책임자를 警部大臣이라 하였으며, 光武 6年(1902年) 8月 警部가 大警務廳으로 格下되면서 禮服과 常服의 變通이 있게 되었다.

警務廳은 1名の 警務使와 12名 以下の 警務官과 30名 以下の 總巡 및 巡檢으로 구성되었다.⁽⁹⁾

建陽 元年(1896年) 4月 勅令 81號로 警部服의 제도가 西歐式을 취하게 되었다.⁽¹⁰⁾ 色은 濃紺色으로 당시 軍服의 黑色과의 區分으로 使用되었으며, 夏衣는 白色으로 上衣에 胸章과 袖章을 장식하였고, 帽子는 李花章을 장식하였고, 계급에 따른 線의 장식을 하였다.

初期 警務服의 構成은 帽子, 上衣, 바지, 靴, 飾帶로 이루어졌고, 建陽 元年(1896年) 4月 勅令 81號로 반포된 警務使 以下の 服制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建陽 元年(1896年)의 警務服制

1. 常 帽

警務使의 常帽는 濃紺色 絨(毛織)의 地質로서 金色의 李花를 前章으로 하며, 직경은 5分으로 한다. 또 帽의 橫章은 白絨으로 하고 7分 넓이의 大線 2條와 함께 2分 넓이의 小線 2條를 수식하며, 帽의 頂上에 銀色의 李花를 장식한다.

警務官(總務局長)의 地質 및 前章의 李花 장식도 同一하며, 常帽의 橫章의 白絨도 同一하나 橫章의 線의 數의 차이가 있어 7分의 大線이 2條이고 2分 넓이의 小線이 1條가 장식되고 있다.

警務官의 常帽의 製式이 警務使와 같고 橫章의 線이 7分 넓이의 大線이 2條 장식되고 있다.

總巡은 橫章이 7分 넓이의 大線이 1條 장식되고 있다.

또 巡檢의 경우는 帽의 前章 장식의 李花의 材質의 차이가 있어 白銅의 李花가 쓰이고 있고, 橫章이 쓰이고 있지 않으나 단 近衛 소속의 巡檢

(1) ① 高宗實錄 卷 31, 高宗 31年 6月, ② 日省錄 高宗篇 31

(2) 高宗實錄 卷 32, 高宗 31年 12月

(3) 앞 책, 高宗 32年 4月

(4) ① 高宗實錄 卷 33, 高宗 32年 11月, ② 李弘植, 國史大事典

(5) ① 앞 책, 高宗 32年 11月, ② 日省錄, 高宗篇 32

(6) 高宗實錄 卷 32, 高宗 32年 4月

(7) ① 高宗實錄 卷 32, 高宗 32年 7月, ② 李弘植, 國史大事典

(8) 李弘植, 國史大事典

(9) 앞 책

(10) 高宗實錄 卷 33, 高宗 33年 4月

은 4分 넓이의 黃色線이 4條 쓰이고 있다. 帽의 頂上의 李花의 材質도 白銅임을 알 수 있다.

2. 常衣

警務使의 常衣는 濃紺色 絨(毛織)으로 하고, 臂章은 李花形의 단추로 左右 5個씩 장식을 하며, 袖章에는 1寸 2分の 黑毛製의 大線 1條와 1分 넓이의 黑毛糸製 4條를 장식한다. 上衣의 製式을 보면, 襟幅은 1寸 2分, 袖長은 팔목의 關節까지의 길이로 하며, 모든 緣邊 및 背面에는 8分 넓이의 黑毛緣이 사용되고 있다. 上衣의 양 옆은 밑에서부터 3寸 5分을 터놓고, 前面 左右 및 胸部에 各 1個의 주머니가 사용되고 있다.

警務官(總務局長)의 常衣는 警務使의 것과 同一하며, 袖章은 大線 1條와 小線 3條로 하며 그 외의 장식은 警務使와 同一하다.

警務官의 常衣도 警務使의 常衣와 同一하나 다만 袖章의 線의 수호가 다름을 알 수 있으며, 大線 1條, 小線 2條를 쓰고 있다.

摠巡은 大線 1條 및 小線 1條의 袖章이 쓰이고 있다.

3. 夏衣

警務使의 夏衣의 地質은 白色으로 하되 品質은 명시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어느 것이든간에 이에 적합하면 되었던 것 같다. 胸章은 常衣와 같이 단추로 하되 그 수는 5個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袖章의 경우에 製式은 冬衣와 같되 材質은 白色의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夏衣의 形態는 冬衣와 같으나, 全緣과 背面의 緣에 장식이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警務官(總務局長), 警務官, 摠巡의 夏衣는 警務使의 制와 同一하다.

光武 1年(1897年) 1月 勅令 7號로 警務使 以下の 常服 바지와 巡檢服의 常衣 및 夏衣를 추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¹⁾

1. 바 지

警務使의 바지는 濃紺色의 絨(毛織)으로 하고 바지의 양옆 線 장식은 白色 絨(毛織)으로 하며, 7分 넓이의 大線 2條와 2分線 1條를 장식한다. 警務官은 警務使의 형태에 준하나, 단 近

衛 소속의 警務官은 黃絨으로 線을 장식한다. 線은 7分線을 2條 使用한다.

摠巡의 바지의 옆선 장식은 7分線 1條를 사용하며, 近衛 소속 摠巡의 線의 장식은 黃色 絨으로 한다.

巡檢의 모든 製式은 警務使와 同一하며, 線의 장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巡檢의 服

巡檢의 常衣(冬衣)는 警務使와 같이 濃紺色 絨으로 하고 李花形의 銅製 단추로 左右 5個씩을 胸章으로 사용하며 袖章의 線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巡檢의 夏衣도 製式은 冬衣와 同一하나 白色의 地質을 使用함이 다를 뿐이다(사진).



B. 光武 3年(1899年)의 禮服制

光武 3年(1899年) 3月 18日 勅令 6號로 警務使 및 警務官의 禮服 및 禮帽의 制를 반포하였고,⁽¹²⁾ 禮裝 및 禮帽의 着用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한다.

- 一. 聖節陳賀 及 問安時
- 一. 各殿宮誕辰陳賀 及 問安時
- 一. 節日陳賀 及 問安時
- 一. 圓丘 社殿宮 動駕時
- 一. 陵園幸行時
- 一. 一應大典禮及 親監行禮 後 問安時
- 一. 宮內因公進見時
- 一. 禮節로 上官을 對할 때
- 一. 各項 公式宴會 及 一應駕儀에 臨할 時

警務使 以下の 禮服의 構成은 禮帽 및 禮裝으로 이루어지며, 禮帽는 頂蓋에 李花의 장식이 있

(11) 官報 535號, 1897年 1月 16日

(12) 官報 1899年 3月 28日

고 線章은 직급에 따라 材料와 線의 數가 다를 수 있다. 地質은 濃紺色 絨이 사용되고 있다. 禮裝은 上衣와 바지, 飾帶, 手套, 靴로 構成되며 濃紺色 地質이며 무궁화形의 장식 및 金線의 자수가 이용되고 있다. 바지는 濃紺色에 白色線의 장식을 이용하고 있다. 단 近衛 소속의 경우에는 黃色 絨線을 장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禮帽

警務使의 禮帽는 帽의 上部는 濃紺色의 絨이며, 그 下部는 白色 絨으로 하며 邊은 黑色 革으로 장식하며, 帽의 頂蓋는 李花를 장식하되 李花는 白質의 銀線이며 주위는 金線으로 장식한다. 帽의 前章에 쓰이는 李花 장식은 銀線으로 하고 金芯을 수놓아 사용하였다. 또 線章의 이용에는 帽의 上部에는 豎金線을 3條, 下部에는 7分 넓이의 大線 2條, 2分 넓이 金線과 小線이 2條 사용되었고, 頤紐는 金線 圓紋으로 左右에 鍍金鑄製의 槿花形의 단추가 이용되었으며, 帽의 製式은 常帽과 同一하다.

警務官의 禮帽도 警務使와 同一하나 線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內容을 보면, 帽의 上部에 사용된 豎金線이 2條, 下部의 7分 넓이의 大線이 2條 및 小線이 1條 사용되고 있다.

2. 禮裝

禮裝은 禮服의 上衣와 바지, 飾帶, 刀, 手套 및 靴로 構成되고 있다. 우선 警務使의 上衣를 보면, 地質은 濃紺色 絨으로 常服의 경우와 같다. 領의 장식은 金絲의 槿花形을 사용하고 있으며, 胸章은 紅絲로 繡를 놓았으며, 繡의 紋樣은 又字로 하여 4條를 사용하고 있으며, 袖口는 紅色 絨으로 緣을 장식하고 있으며, 左右의 襟과 그 밑부분은 黑絲의 넓은 線을 장식하고 있다. 또 肩章은 半月形의 金絲廣織에 銀絲로 李花를 4個 수놓아 사용하고 있으며, 袖章은 金絲로 1條를 사용하고 있다.

바지는 常服과 같다.

飾帶는 赤色의 廣織을 밑으로 垂飾한 후 여기에 金環을 2個 장식하고 있다.

手套는 白色의 革을 이용하고 있다.

靴는 短靴를 이용하고 있다.

警務官의 上衣도 警務使의 製式에 준하나 단

胸章은 紅絲의 수 장식선이 3條 이용되었고, 肩章에는 銀絲의 繡飾 李花가 3個 사용되며, 袖章에는 金絲의 繡線이 3條가 이용되고 있다.

바지의 製式도 警務使에 준하나 近衛 소속의 警務官은 黃色 絨線을 사용하고 있다. 그의 飾帶手套 및 靴의 製式은 警務使와 同一하다.

C. 光武 3年(1899年)의 常服制

곧 이어 同年 3월 24일 勅令 9號로 警務使 警務官 및 摠巡의 服制 중 常帽, 常服과 外套를 추가하여 반포하였고,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¹³⁾

1. 常帽

警務使의 常帽는 濃紺色 絨을 地質로 하고 그 製式은 禮帽와 같으나, 上部에 白線을 장식하고 帽의 下部에 橫의 白絨 大線을 2條, 小線을 2條 사용하였으며, 前章의 李花形은 鍍金鑄製가 이용되었다. 頤紐로 이용된 것은 黑絲圓織이며 左右에 鍍金鑄製의 槿花形 단추가 이용되었다.

警務官의 常帽도 警務使에 준하며 帽의 下半部 장식선의 차이가 보이며, 白絨 大線이 2條, 小線이 1條 사용되고 있고, 단 近衛 소속의 경우에는 黃線이 이용되고 있다.

摠巡은 白絨 大線이 2條 사용되었으며, 近衛 소속의 경우엔 黃色 絨이 이용되고 있다.

巡檢은 白色 絨의 小線이 1條 사용되고 있고, 역시 巡衛 소속의 경우엔 黃色 絨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常裝

常裝은 上衣, 바지, 刀, 手套 및 靴로 構成되어 있으며 警務使의 常裝을 살펴보면, 우선 上衣에 있어서 地質은 濃紺色 絨이 이용되었으며, 槿花形의 단추가 사용되고 있으며, 左右 襟 및 그 주변에는 金絲 廣織의 緣이 쓰이고 있고, 袖章은 黑色으로 1條 및 黑絲의 又字形이 5條 利用되고 있다.

바지 및 刀의 製式은 禮裝과 同一하다.

手套는 白色 革 또는 茶色 革이 利用되었다.

靴는 短靴 혹은 長靴가 사용되었다.

警務官의 上衣는 警務使에 준하나 袖章의 경우 黑絲의 又字形 장식이 2條 이용되고 있고, 그 외의 모든 제식은 警務使와 同一하다.

摠巡은 袖章에 黑絲의 又字形 장식이 2條 사

(13) 官報, 1899年 3月 28日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外 套

防寒用으로 製式은 隨體形으로 되어 있으며, 警務使의 外套는 濃紺色 絨이 地質로 利用되고 있고 胸章은 左右에 各 7個의 단추가 사용되고 있으며, 袖章은 鍍金の 星形이 3個, 그리고 白絨의 小線이 3條가 이용되고 있다.

警務官은 星形이 2개 그리고 小線이 2條가 쓰이고 있고, 摠巡은 星形이 1個, 小線이 1條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 光武 4年(1900年)의 警部服制

光武 4年(1900年) 10月 警務廳이 警部로 昇格됨에 따라 同 10日 勅令 37號로 警部大臣 以下 警部 소속 各 職급의 禮服制가 반포되었고,⁽¹⁴⁾ 同 13日 勅令 38號로 警部大臣 以下 警務服의 常帽 및 常服制가 반포되었으며,⁽¹⁵⁾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禮 服

1. 禮 帽

禮帽에 있어서는 光武 3年(1899年)의 制度와 같으나, 帽의 下部 장식인 小線의 수효가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警部大臣은 8條, 協辦은 7條, 勅任局長은 6條, 奏任局長은 5條, 警務官과 監獄署長은 4條, 外方警務官은 3條, 摠巡은 2條 및 外方摠巡은 1條로 하여, 光武 3年(1899年)의 禮帽制와 비교하여 보면 警務使가 2條, 警務官이 1條였음을 알 수 있다.

2. 上 衣

上衣 또한 制度의 차이는 없으나, 胸章과 肩章 장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光武 3年(1899年)에는 警務使가 胸章으로 4條의 線을 장식하였고, 警務官은 3條의 線을 장식하였던 바, 光武 4年(1900年)의 制度에 의하면 警部大臣 以下 모두가 7分線의 장식을 썼고, 肩章은 警部大臣, 協辦, 勅任局長 등은 金糸의 太極을 달았으며, 奏任局長과 警務官은 銀糸의 太極, 摠巡은 靑紅糸의 太極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領에는 警部大臣 및 協辦은 紅絨을 사용하였

고, 勅任局長은 橫金糸 6條, 奏任局長은 5條, 警務官과 監獄署長은 4條, 外方警務官은 3條, 摠巡은 2條, 그리고 外方摠巡은 1條의 장식을 사용하였다.

袖章은 金糸의 線裝飾과 又字形의 金糸裝飾을 썼으며, 上端에는 金糸로 李花 무늬를 1個 수놓아 장식하고 있다. 警務大臣의 金糸 又字 장식선을 8條, 協辦은 7條, 勅任局長은 6條, 奏任局長은 5條, 警務官 및 監獄署長은 4條, 外方警務官은 3條, 摠巡은 2條를 사용하고 있다.

3. 바 지

바지는 上衣와 同色 同地質이며, 바지의 양옆에 白色 絨線을 사용하였는데, 警部大臣 以下 協辦 및 勅任局長은 7分 넓이의 白絨線 2條와 그 中央에 3分 넓이의 白絨線을 사용하였으며, 奏任局長 및 警務官은 7分 넓이의 線을 2條 사용하였고, 近衛 소속의 경우엔 黃色 絨線을 2條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摠巡은 7分 幅의 白絨線을 2條 장식하나, 近衛 소속의 摠巡은 7分 幅의 黃色 絨線을 1條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飾 帶

飾帶의 경우에는 警部大臣 以下 警務官에 이르는 各 職급이 共히 赤糸廣織을 아래로 드리우고 銀糸紐을 내리고 그 위로 金糸의 環을 3個 장식하고 있음에 비해, 摠巡은 銀糸紐 대신에 赤糸紐을 드리우고 있고 그 위로 金糸 環을 1個 장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手 套

警部大臣 以下 摠巡에 이르기까지 모두 白色 革製를 사용하였다.

6. 靴

警部大臣 以下 摠巡에 이르기까지 모두 短靴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常 服

1. 常 帽

常帽의 製式은 光武 3年(1899年)의 製式과 같다.

濃紺色 絨의 地質에 下部는 白色 絨을 사용하였으며, 黑色 小線이 사용되고 있다.

警部大臣은 8條, 協辦은 7條, 勅任局長은 6條, 奏任局長은 5條, 警務官은 4條, 外方警務官은 3

(14) 官報 1900年 10月 10日

(15) 官報 1900年 10月 13日

條, 摠巡은 2條의 黑色 小線 장식을 사용하였고, 그의 頤紐는 黑色로 만든 끈에 左右에 鍍金鑄製의 權花形 단추를 장식하고 있으며, 이의 이용은 모두에게 共通되고 있다. 常帽의 前章도 鍍金鑄製의 李花形으로서 모두에게 同一함을 알 수 있다.

2. 上 衣

光武 3年(1899年)의 制와 비교하여 보면 肩章이 추가되고 있음이 큰 特色이다. 또 袖章에는 禮服과 같이 黑色의 又字形 장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袖章의 上端에 李花形이 장식되고 있다. 肩章은 白金糸의 장식선을 사용하고 그 아래 부분에 太極 문양을 이용하고 있다. 地質은 濃紺色 絨으로 되어 있다.

警部大臣은 肩章의 白金糸 장식이 8條가 쓰이고 있으며, 袖章 또한 又字形이 8條 장식되고 있다. 協辦은 7條, 勅任局長은 6條, 奏任局長은 5條, 警務官은 4條, 外方警務官은 3條, 摠巡은 1條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바 지

바지는 濃紺色의 絨에 白色의 絨을 양옆에 장식선으로 이용하고 있다. 禮服의 바지와 같이, 警部大臣 以下 協辦, 勅任局長은 7分線 2條 사이에 3分線 1條를 이용하며, 奏任局長과 警務官은 7分線을 2條 장식하며, 摠巡은 7分線 1條만을 사용함을 알 수 있으며, 近衛 소속의 警務官과 摠巡은 黃色 絨線의 장식을 이용한다.

4. 手 套

禮服과 同一한 白色의 革製이며, 예로는 茶色의 가죽을 쓰기도 하였다.

5. 靴

警部大臣 以下 모두가 短靴 또는 長靴를 착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6. 外 套

防寒用으로 地質을 濃紺色 絨으로 하고 胸章으로 左右에 각각 7個씩의 단추를 장식한다.

袖章에는 白色의 絨으로써 小線을 사용하였으며 金星形의 장식을 함께 사용함을 알 수 있고, 警部大臣, 協辦, 勅任局長은 白色 絨의 小線을 1條 사용하고 여기에 金星形을 3個 덧붙여 장식함을 알 수 있다. 奏任局長 및 警務官과 摠巡은

金星形을 1個 장식하였다.

E. 光武 6年(1902年)의 警務服制

光武 6年(1902年) 8月 警部가 大警務廳으로 格下되면서 警務服의 禮服과 常服의 變通이 있게 되었다. 同年 8月 3日 勅令 11號로 警務使 以下 各 級의 禮服制의 반포가 있었고, (16) 勅令 12號로 常服制가 반포되었다. (17) 이 勅令의 內容은 光武 4年(1900年) 10月 13日의 勅令 37號를 참고하여 變通할 수 있도록 禮帽와 禮裝의 着用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그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中央과 地方의 차별이 없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禮 服

1. 禮 帽

帽의 制度는 光武 4年(1900年) 10月 勅令 37號로 반포된 制度와 同一하나, 禮帽의 下部에 사용된 小線의 수효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警務使의 禮帽는 警部時代의 奏任局長에 준하는 小線 5條를 장식하였으며, 警務局長은 4條, 警務官은 3條, 摠巡은 2條를 사용하며, 前章은 銀線의 李花이며 金芯을 자수로써 장식하고 있고, 모자 위의 李花도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上 衣

上衣의 地質은 濃紺色의 絨으로 하며 전반적인 製式은 光武 4年(1900年)의 製式과 同一하다.

衣領의 材質의 變化를 볼 수 있는데 警部大臣은 紅絨의 領임에 비해 警務使는 白色絨임을 알 수 있다. 또 袖章의 장식 線의 수효가 감소됨을 볼 수 있다. 警務使는 5條, 警務局長은 4條, 警務官은 3條, 摠巡은 2條로 하고 있으며, 肩章의 材質을 살펴보면 警務使는 金糸의 圓紋樣 내에 金糸의 太極裝飾이 쓰이고, 警務局長은 金糸의 太極裝飾이, 警務官은 銀糸의 絨장장식이, 摠巡은 靑紅糸의 肩章裝飾이 각기 달리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바 지

바지의 製式도 전기한 光武 4年(1900年)의 것과 同一하다.

4. 飾 帶

光武 4年(1900年)의 制度와 同一하며, 警務使

(16) 官報 1902年 8月 3日

(17) 官報 1902年 8月 6日

[五 1]

光武 4年(1900年) 警部 禮服

名稱	禮			帽		上 衣	袴	飾 帶	刀	手套	靴
	地 質	頂蓋李花	線·章	前·章	頭 紐						
警 務 大 臣	上半部 濃紺絨 下半部 白絨沿 邊黑革	白質金 飾外邊 周圍金 線兩股 織	上半部接 圓處前後 左右豎金 線兩股織 各 3 條 下半部橫 金線區織 5 分大線 2 條金線 兩股織小 線 8 條	銀線金 蕊李花 繡 粧	金絲圓 織左右 釦子鍍 金鑄製 權花形	地質濃紺釦子黑 絲圓織結頭權花 形衣領紅絨品質 表章沿邊金線區 織 7分大線正中 橫繡金線固字文 肩章品質金絲圓 絞織上頭下短如 半月形正中金絲 太極袖口白絨線 但近衛用黃絨左 右襟及下邊黑絲 廣織線 袖章金絲區織一 條金絲兩股織又 字形 8條又字形 上端金絲繡飾李 花 1個	地質濃 紺絨白 絨 線 左右股 7 分 2 條中 3 分 1條	品質赤 絲廣織 下垂銀 絲 紐 垂上金 絲環三 個	柄鍍金 權花葉 前後面 正中全 體雕刻 太極刀 緒金絲 製	白 革	短 靴
協辦			金線兩股 織 小 線 7 條			同 肩章金絲太極但 袖章 7條	同	同	同 太 極 半 部	同	同
勅任 局長			同 6 條			同 衣領橫金絲 6條 肩章金絲太極但 袖章 6條	同	同	同	同	同
奏任 局長			同 5 條			同 衣領橫金條 5絲 肩章銀絲 但 5條	同 7 分線 2 條 左右股	同	同 太 極 3 分 2	同	同
警務官 監 獄 署 長			同 4 條			同 但 4條 但 4條	同 但近衛 用黃絨	同	同	同	同
外 方 警務官			同 3 條			同 但 3條 但 5條	同 7 分線 2條 左右股	同	同	同	同
摠 巡 看守長			同 2 條			同 但 2條 青紅絲太極	同 但近衛 用黃絨 7 分線 1條 左右股	同 下垂赤 絲紐垂 上金絲 環 1個	同 太 極 3 分 1	同	同
外方 摠巡			同 1 條			同 但 1條 但 1條	同	同	同	同	同

名稱	常 帽				上 衣	袴		刀	六 穴 砲	手 套	靴	套		
	地 質	橫 章	前 章	眼 庇		頭 紐	地 質					筋 裝 式	地 質	胸 章
警務使	上半部濃紺絨下半部白絨	上半部左右前各立黑小線 3條下半部以下橫黑線條	鍍金鑄製李花形	革表黑裏萌黃	黑絲兩股織左右鈕子鑄製花形	品質濃紺絨釦子黑線圓織結頸圍花形左右襟及下邊黑絲廣織線袖章黑絲圍織 1 條黑絲又字形 5 條肩章品貨百絨上端方橫金絲 5 條下端李花形青紅絲太極	濃紺絨白絨	左右7分線2條中8分 1條 左右股	柄鍍金權花葉前後面正中前體雕刻太極刀帶革刀緒黑絲製	白革或茶色革	短靴或長靴	濃紺絨	左右金釦各 7個	白絨線 1條上項金絲兩股織 3條金星形 9個
務 局 長	同	奏任則黑小線 2條 同 下半部橫黑小線 4 條	同	同	同	袖章 4條 肩章 4條	同	同	同			同	同	奏任則金星形 2個
警務官 獄 長	同	上半部前後左右立黑小線 2條下半部以下橫黑小線 3條	同	同	同	袖章 3條 肩章 3條	同	同	同			同	同	兩股織 2條 金星形 2個
巡 看 守 長	同	上半部前後左右立黑小線 1條下半部以下橫黑小線 2條	同	同	同	盞章 2條 肩章 2條	同	同	同			同	同	白絨小線 1條 上項金絲兩股 織 1條金星形 1個
權 任	同	但下半部橫黑小線 1條	同	同	同		同	不 付 線				同	左右金釦袖口 2寸 上白子各 6個 絲線 1條	
巡 檢	上半部俱用濃紺絨 下半部白絨 小線 1條		同	同	同		同	不 付 線						

[五 4]

光武 6年(1902年) 大警務廳의 禮服

名稱	禮		帽		上 衣	袴	飾 帶	刀	手套	靴	
	地 質	頂蓋李花	線 章	前 章							頤 紐
警務使	上半部濃紺絨 下半部白絨沿邊黑革	白質金飾外邊 周圍金線兩股織	上半部接圓處前後左右堅金線兩股織各 3條 下半部橫金絲區織 5 分大線 2 條金線兩股織小線 5條	銀線金蕊李花繡粧	金絲圓織左右 金鑄製權花形	地質濃紺絨釦子黑絲圓織結頭權花形衣領白絨品質表章沿邊金絲區織七分大線正中橫繡金線回字文 肩章品質金絲圓紋織上頭下端如半月形正中金絲太極袖口白絨緣左右襟及下邊黑絲廣織線 袖章金絲區織一條金絲兩股織又字形五條又字形上端金絲繡飾李花一個	地質濃紺絨白絨線左右股 7分2條中3分1條	品質赤絲廣織下垂銀絲紐垂上金絲環 3 個	柄鍍金權花葉前後面正中全體雕刻太極刀帶金絲廣織刀緒金絲製	白 革	短 靴
警 務 局 長	同	同	2條金線兩股織小線 4條	同	同	衣領橫金經 4 條肩章金絲太極袖章 4條	奏 任 則 7 同分線 2條	同	太極半部奏任則刀帶同黑革	同	同
警務官 監獄 署長	同	同	同 3條	同	同	衣 領 橫 金 絲 3條 同 肩 章 銀 絲 袖 章 3 條	白絨 7分2線條 同 左右股	下垂玉色絲紐垂上 同 金絲環 2個	太極 3 同 分2	同	同
摠巡 看守長	同	同	同 2條	同	同	2條 同肩章青紅絲 袖章 2條	白絨7分同線條1 左右股	同下垂赤絲垂上金絲環 1個	同太極 3分 1	同	同

와 警務局長의 飾帶는 警部大臣과 같고, 金糸의 環을 3個 달아 사용하고 있으며, 警務官은 玉色糸를 드리우고 그 위에 金糸 環을 2個 장식하고 있다. 摠巡은 赤糸를 늘이우고 金糸의 環을 1個 사용하고 있다.

(2) 常 服

1. 常 帽

常帽도 禮帽와 같이 小線 장식의 수효가 감소됨을 볼 수 있다.

警務使는 5條, 警務局長은 4條, 警務官은 3條, 摠巡은 2條를 장식하며 巡檢은 장식선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上 衣

警務使는 袖章 및 肩章이 各 5條이고, 警務局長은 4條, 警務官은 3條, 摠巡은 2條, 巡檢은 1條를 쓰고 있다.

3. 바 지

禮服과 同一함을 알 수 있다.

4. 外 套

光武 3年(1899年)의 常服制 중 外套와 同一하다. 또한 光武 4年(1900年)의 常服制 중 外套와 同一한 製式 및 장식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Ⅲ. 結 言

이상으로 高宗 32年(1895年) 軍國機務處에서 警務廳으로 始作된 新制度의 警務服을 시작으로 하여 光武 9年(1905年) 警務廳의 역할이 日本軍 헌병대로 넘어가기까지의 10년에 걸친 警察服의 변천은 극히 미묘한 장식의 變化 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警部服은 大別하면, 禮服과 常服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의 構成은 上衣, 下衣인 바지, 帽와 飾帶, 刀, 手套, 靴 및 外套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의 着用은 勅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하여진다.

上衣와 바지, 帽 및 外套의 材質은 濃紺絨으로 하되 職級 및 소속처에 따라 線飾의 수효와 色의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服制는 舊制를 떠나 西歐式의 形態를 갖추고 있다.

裝飾은 主로 鍍金의 李花나 權花形을 사용하고 있으며, 바지의 양 옆의 線裝飾은 각 職位에 따라 色과 수효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李花나 權花形의 使用 材質과 꽃술의 표현이 材質에 따른 각 職位의 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禮服의 장식에 金糸의 利用이 많음도 특기할 만한 것으로 생각되며, 常服은 主로 黑糸 장식이 많음도 舊韓末의 時代相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 같다. 또한 禮服의 장식은 常服에 비해 보다 修飾的인 面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高宗實錄, 서울: 探求堂, 影印本, 1970.
 韓國官報, 서울: 亞細亞文化史, 影印本, 1973.
 日省錄, 高宗篇, 서울: 서울大學校 古典刊行會, 影印本.
 韓國史, 서울: 震檀學會, 1961.
 李弘植, 國史大事典, 서울: 백만사, 1972.
 被服文化協會編, 日本服飾大百科事典, 上, 東京, 昭和 44年(1969).
 高宗時代史, 卷 5, 서울: 國史편찬위원회.